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**2012년 01월 09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강**	강** 1955-02-27	경기도 구리시 안골로	무단전출
임**	임** 1958-10-10	경기도 구리시 안골로	무단전출
임**	김** 1962-02-24	경기도 구리시 안골로	무단전출
임**	임** 1985-06-22	경기도 구리시 안골로	무단전출
이**	이** 1911-10-14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	무단전출
제**	제** 1952-12-27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	무단전출
백**	백** 1991-01-22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67-05-06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13번길	무단전출
박**	노** 1919-07-19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13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86-03-06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29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유 은서 문의전화 : 031-550-2607)

2012년 01월 02일

수택2동장 인